

	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7	제 정 일 자	2013.08.2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일자(번호)	2018.07.05(1)	쪽 번 호	1 / 4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2 장 액화석유가스 사업 등	사업의 허가등	법 5 조 영 3 조 규칙 7,12,13,14 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관할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			해당 없음	
	저장소의 설치 허가	법 8 조 영 4 조 규칙 7,12 조 고시 044-203-5136	- 저장소의 설치허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1)내용적 1L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500kg 다만, 내용적 1 리터 미만의 용기 중 안전밸브가 부착된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경우에는 1 톤 2)제 1 호 외의 저장설비(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저장설비는 제외)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5 톤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사업소의 이전 2) 상호의 변경 3)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4)저장설비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충전설비.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 5)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의 교체 설치 6)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의 용량 증가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충전설비.기화장치.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의 수량 증가 *규칙[별표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해당 없음	
	사업개시 등의 신고	법 11 조 규칙 18 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2)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 없음	
제 5 장 안전관리	공급자 의무	법 30 조 규칙 42 조	- 액화석유가스공급 시 수요자 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예방에 필요사항 사항 지도 - 필요 시 수요자에게 시설개선 권고 - 수요자 미 개선 시 관할관서에 신고	공급자 요구사항 준수		공급자 요구사항 준수	
	안전관리규정	법 31 조 영 14 조 규칙 43~46 조	액화석유 사업자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안전관리규정을 관할관서에 제출 이때, 한국가스안전공사 의견서 첨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시설.용기의 안전유지	법 32 조 규칙 47 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안전관리자	법 34 조 영 16 조 고시 044-203-5136 규칙 49 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 고시: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LPG 설비운영세칙에 직무반영 ■ 자체선임(1명)		-LPG 설비운영세칙 -안전관리자선임 등 보고서	

	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7	제 정 일 자	2013.08.2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일자(번호)	2018.07.05(1)	쪽 번 호	2 / 4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법 36 조 규칙 51 조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의 공정별로 허가관청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함.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해당 없음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법 37 조 영 17 조 규칙 52 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	법 38 조 규칙 55,56 조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의 총합계가 1 천 톤 이상인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설치된 시설로서 최초로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 년이 지난 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의 총합계가 1 천톤 이상인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없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의 설치와 검사 등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 - 가사용시설검비 - 완성검사, 정기검사	법 44 조 규칙 69,70,71 조	-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기준과 기술 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 용품을 검비 - 다음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설 사용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검	- LPG 설비운영세칙 제정운영 -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검	-LPG 설비운영세칙 -완성검사증명서 -정기검사증명서		

	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7	제 정 일 자	2013.08.2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일자(번호)	2018.07.05(1)	쪽 번 호	3 / 4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별표 1] 보호시설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 제 1 종 보호시설 가. 학교·유치원·어린이집·놀이방·어린이놀이터·경로당 · 청소년수련시설·학원·병원(의원을 포함한다)·도서관·시장·공중목욕탕·호텔·여관·극장·교회 및 공회당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다. 음식점·장례식장 및 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 명 이상인 건축물 라. 아동·노인·모자(母子)·장애인,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20 명 이상인 건축물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 제 2 종 보호시설 가. 주택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 이상 1 천㎡ 미만인 것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1. 제 1 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제 1 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다.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kg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라. 저장능력이 250kg 이상 5 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 마.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건축주 바.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변경공사] 1. 저장설비(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용기집합설비,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위치 변경 또는 설치수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용량증가 공사 2.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교체 설치하는 공사 3. 저장설비(용기,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종류를 변경하는 공사 4. 가스설비(기화장치, 펌프 및 압축기만을 말한다)의 수량을 증가하거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5.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관을 20m 이상 증설하는 공사 [완성검사, 정기검사 시기] ① 완성검사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사용 시작 7 일 전 ② 정기검사 :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 1.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매 6 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 일 이내 2. 제 1 종 보호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이 100kg 이하인 경로당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그 영업장면적이 100 ㎡ 미만인 자 및 제 48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매 10 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 일 이내 3. 제 1 호 및 제 2 호 외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매 1 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 일 이내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규칙[별표 15]			

	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7	제 정 일 자	2013.08.2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일자(번호)	2018.07.05(1)	쪽 번 호	4 / 4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안전교육	법 41 조 규칙 66 조	-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등은 한 국가안전공사로부터 안전교육 수료	안전교육 수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교육수료증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가. 전문교육	1)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2)의 대상자는 제외한다] 2)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 3)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른 제 1 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만을 말한다) 4)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른 제 2 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의 기술능력인 시공자 양성교육 또는 가스시설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정한다)와 제 2 종 가스시설 시공업자 에게 채용된 시공관리자 5)온수보일러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른 제 3 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의 기술능력인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 교육 또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정 한다)와 제 3 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 채용된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6)액화석유가스 운반책임자		신규종사 후 6 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3 년이 되는 해마다 1 회	
			나. 특별교육	1)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운전자 2)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와 액화석유가스 배달원 3)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충전원 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른 제 1 종 또는 제 2 종 가스시설시공업자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또는 자동차폐차업자의 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연료계통 부품의 정비작업 또는 폐차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신규종사 시 1 회	
			다. 양성교육	1) 일반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3) 판매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4) 사용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5) 가스시설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6) 시공자가 되려는 자 7) 온수보일러 시공자가 되려는 자 8)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9)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이 되려는 자			
제 7 장 감독	사고의 통보 등	법 56 조 규칙 74 조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 실시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 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발생시 통보	발생시 통보		
제 8 장 보칙	보험가입	법 57 조 영 30 조 규칙 75 조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보험에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보험가입	보험가입증명서류		